

대전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가단1462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9.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이 2021. 12. 9.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2021. 12.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접수 제873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판사 오현석

별지